

통일교의 종교교육과 인권

김 항 제

선문대학교

〈요 약〉

종교도 인간이 꾸려가는 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담론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에서의 인권은 종교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신앙적 차별 때문에 빚어지는 인권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종교 간 혹은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차별과 탄압으로서의 인권문제가 있을 수 있다. 종교교육에서도 종교가 담지하고 있는 인권 담론과 자신이 행하고 있는 혹은 당하고 있는 차별과 탄압을 극복하기 위한 인권을 가르치고 지켜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 종교교육 현장에서의 인권문제를 조사 분석해보고 그를 통해 나타난 통일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의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통일교는 종교 없는 세상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종교의 자유는 보전되며 종교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일교에서 종교의 자유는 물론 중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더불어 종교교육을 받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종교 관련 인권을 가르치는 내용도 있어야 할 것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통일교가 세운 중립학교임을 잘 아는 학생들(90.6%)로서 통일교의 종교교육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은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의 인권교육에 있어 주의를 끄는 대목도 있다. 예를 들면 종교과목 대신 개설하는 대체과목의 인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설문 조사 결과(84.8%)는 종교 수업의 자유를 위한 대체과목을 잘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과목의 개설 이전에 대체과목의 인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며 종교 관련 인권을 보전하는 길을 열 수 있어 오히려 중립학교로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주제어: 통일교(Unificationism), 종교교육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적 인권, 인권담론

I. 시작하며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자명하게 주어지는 권리’, ‘천부인권’, ‘양도하지 못하는 권리’, ‘자연권’,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등으로 설명된다.¹⁾ 그러나 이와 같이 인권을 선형적이며 절대적인 최고선으로 설명하는 인권담론은 인권이 수단인지 목적인지 또는 인권이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의 논란을 야기한다. 나아가 인권이 법을 중심으로 이해된다면 오직 인권을 법적 권리로 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인권이 교조적이며 엘리트의 특권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선적일 수도 있다는 딜레마를 갖고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론의 공통점은 인권 개념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며³⁾ 따라서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인권 개념 자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권 담론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종교도 인간이 꾸려가는 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에서의 인권은 종교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신앙적 차별 때문에 빚어지는 인권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종교 간 혹은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차별과 탄압으로서의 인권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에서도 종교가 담지하고 있는 인권 담론과 자신이 행하고 있는 혹은 당하고 있는 차별과 탄압을 극복하기 위한 인권을 가르치고 지켜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과 종교교육의 관계를 일별한 후 통일교 종교교육 현장에서의 인권문제를 조사 분석해보고 그를 통해 나타난 통일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의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물론 본 논문에서 조사 분석을 위해 사용한 설문의 적합성이나 심층적 조사를 위한 설문의 다양성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통일교의 종교교육 현장에서 종교교육의 자유와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라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II. 인권으로 보는 종교교육, 종교교육으로 보는 인권

1. 인권으로 보는 종교교육

1948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면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인권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

1) 조효제, 『인권의 문법』(서울: 후마니타스, 2007), 21쪽.

2) 위의 책, 23-27쪽.

3) 오늘날 인권은 과거의 ‘탄압 패러다임’에서 ‘웰빙 패러다임’으로 그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위의 책, 30쪽).

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권리에는 가르침, 실천, 예배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걸어로 드러낼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⁴⁾ 이와 같은 종교 관련 인권이 포함된 세계인권선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인권에 종교 관련 인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며 인권의 여러 차원 중 하나가 종교 관련 인권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종교 관련 인권은 먼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의 자유란 종교적 가르침, 실천, 예배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걸어로 드러낼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다른 사람의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표명하고 그 종교나 신념에 따른 의식과 실천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종교 관련 인권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곧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과 그에 대한 합의에 의해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권의 주체라는 관념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은 법으로 강제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왜냐하면 인권은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은 법적 의미에서 법적 실체로는 여겨질 수 없다. 인권은 모든 인간을 어떤 종류로 다루느냐에 대한 도덕적 요구이며 그러한 요구는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인간의 양심에 의해서만 강제 될 뿐이기 때문이다.⁵⁾

하어튼 종교적 인권은 종교나 신념에 관한 신앙의 자유와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인권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자유롭다는 자연법적 원칙에 따라 일체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보편적인 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 관련 인권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적 주권보다도 우선하며 어떤 형태의 위기상황에서도 유보되거나 침해받지 않는 고귀한 천부적 권리를 담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 관련 인권에 비추어 종교교육에 있어서의 인권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교사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차별 금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있는 후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선언은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선언은 1989년 ‘어린이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잘 나타나 있다.⁶⁾ 이 협약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4) 미셸린 이샤이, *The History of Human Rights*, 조효제 옮김, 『세계인권사상사』(서울: 도서출판 길, 2005), 690쪽.

5) 이종은, 『평등, 자유, 권리』(서울: 책세상, 2011), 557-558쪽.

6)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명시된 내용 중 하나이다(김성재 외, 『인권시대를 향하여』(서울: 나남출판, 2002), 26쪽; John Witte, Jr and M. Christian Green ed., *Religion and Human Rights* (New

인권조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조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였음을 상기한다고 전제하면서 그중에서 14조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⁷⁾ 이 역시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발표된 ‘새 청소년 헌장’에서 청소년의 권리로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 또한 세계인권선언이나 어린이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다르지 않은 차별금지로서의 인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⁸⁾ 제2장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 1항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2항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덧붙여 인권보장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종교는 인권 보장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며 인권보장을 위한 종교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 삶을 인권존중의 가치로 전환시킴으로써 내가 존중되고 그럼으로써 남도 존중하며 사회적으로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의 기본방향”⁹⁾은 인권에 대한 종교교육의 기본 방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종교교육으로 보는 인권

종교는 보편적으로 인권을 담지하고 있다. 인권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권리라면 어느 종교에서든지 인권을 천부적인 혹은 유아독존의 권리로 담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역사적 종교는 인권을 신적 권리나 존재 자체의 권리로 여겨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종교는 신앙의 자유는 물론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오지 않았으며 종교적 차별을 서슴없이 자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가르침이나 실천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의식을 행할 수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302-303쪽).

7) 앞의 책, 224쪽.

8)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www.st-rights.or.kr).

9) 앞의 책, 19-20쪽.

있는 자유를 말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공개적이며 개인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역사적 종교는 억압해왔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인권을 종교적 차별을 통해 탄압해왔다.

이러한 종교적 차별은 종교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종립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최근 종교교육의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간 학교가 아니라 평준화정책에 따른 강제배정에 의해 입학한 이들 종립 사립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이나 종교행사의 참여가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종교교육의 자유를 학생의 신앙의 자유보다 더 우선시 하면서 일어나는 종교적 차별과 인권의 침해였다.¹¹⁾ 이러한 종교적 차별과 인권의 침해에 대해 종교교육에 있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의 경계 설정을 하면 이렇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종립학교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의사를 표시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에 대한 종교교육을 시킬 수 있고 각종 학교행사에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있다. 또한 종교과목 수업에 참석을 강요하지 않고 대체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종교행사 불참 시 교실에 남아 자습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다.¹²⁾

그러나 허용되지 않는 것은 순종서약서를 받거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에게 권유한다거나 종교과목을 대체과목보다 특혜를 준다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종교교육의 자유다.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한 특정 종교적 언행과 그로 인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나 학교장의 종교적 신념과 학교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학생의 신앙의 자유 침해 등은 허용되지 않는 종교교육의 자유다.¹³⁾ 다시 말하면 종교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반 인권의 현실은 주로 종립학교의 교사와 학교 당국에 의한 직간접적인 종교적 차별이며 인권침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종교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립 사립학교가 추구하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렇게 경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종립학교와 학생의 인권이 빚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학교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종교교육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신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10)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유명한 사건은 강의석 사건이었다. 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은 강의석, 「학교 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 『민주법학』 제26호(서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326-327쪽 참조.

11) 임지봉, 「사립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인권」, 『세계헌법연구』 제17권 2호(서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112쪽.

12) 앞의 글, 124쪽.

13) 종교 침해의 사례는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학부모 울타리’(학자울)(cafe.naver.com/hakjawool)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종교자유 침해 사례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www.kirf.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을 조화롭게 그리고 균형 있게 실현하는 방법으로 먼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의 현실로 볼 때 당분간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나 장래 실현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다음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학교는 지원 또는 입학 이전에 학생에게 종교교육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가 미리 종교교육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주었다하더라도 대체과목의 개설이 가능한 경우 개설되어야 한다. 나아가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¹⁴⁾

종교교육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것이지만 학교 또는 학원의 성격을 띠는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교육관계법령의 규율을 받으면서 학생의 신앙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¹⁵⁾ 또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방향도 진화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개별 종교적 전통 아래에서 실시되어온 종교교육은 궁극적으로 종교성교육에 의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비판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¹⁶⁾ 이 때 종교성교육은 특정 종교의 종교로서의 본래성¹⁷⁾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종교의 보편적 종교체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종교 일반에 관한 인식이 포함되는 교육을 말한다.¹⁸⁾

Ⅲ. 통일교 종교교육 현장에서의 인권 문제

통일교는 창시자의 뜻에 따라 육영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선문학원을 설립하고 선문대학교와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를 비롯 선화예술학교(중등과정), 선화예술고등학교를 세우고 선정중학교, 선정고등학교 그리고 선정관광고등학교를 인수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초등학교 그리고 청심국제중고등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⁹⁾ 모든 학교가

14)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서울: 홍문사, 2010), 177-180쪽.

15) 황준성 외, 「‘종교교육의 자유’의 법리 및 관련 법령 관례 분석」, 『교육법학연구』 제19권 2호(서울: 대한교육법학회, 2007), 204쪽. 그 외에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문제와 그 해결 방향과 방안을 알아볼 수 있는 논문으로는 김유환, 「초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법학연구』 제9권 1호(서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305-322쪽; 이승진 외, 「종립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법교육연구』 제2권 제2호(서울: 한국법교육학회, 2007), 75-97쪽.

16) 고진호,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을 위한 방향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제23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18-19쪽.

17)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원 엮음,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학지사, 2007), 10-11쪽.

18) 앞의 글, 21쪽.

19) 여기서는 특화된 학교 청심국제중고등학교는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도 통일교의 육영사업은 국제교육재단(IEF)을 1990년 설립하고 세계적인 육영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세계평화교수협의회(PWPA)와 세계대학연맹(WUF) 등도 결성하여 세계고등교육기관의 연합적인 교육운동도 벌이고 있다(김향제, 『통일교의학연구 II』(아산: 선문대출판부, 2002), 95-97쪽, 104-107쪽).

‘애천(愛天) 애인(愛人) 애국(愛國)’을 교훈으로 삼고 종립 사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인성을 포함한 지혜의 함양을 위한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정에서는 자체 재단에서 출판한 종교교과서²⁰⁾를 중심으로 종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통일교 종교교육 현장에서의 인권문제는 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앙의 자유와 차별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에 대한 설문을 통해 여론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통일교 종교교육 현장에서의 인권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응답자의 종교를 살피고, 응답자가 다니는 학교가 종립학교인지를 알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통일교 종교교육 현장에서의 인권문제를 알아 볼 수 있는 기초 조사를 수행했다. 둘째, 응답자에게 종교교육의 현장에서 친구나 교사 그리고 학교당국에 의해 종교적 차별을 받았는지를 물음으로써 인권문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했다. 셋째, 평준화에 의해 강제 배정된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차별을 억제하고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채택한 의무사항은 대체과목의 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종교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의 인지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대체과목의 고지 수행여부를 알아보하고자 했다. 또한 종교수업의 내용이 한 종교에 치중되어 있는가를 묻고 일부이기는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교교과서로서의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적합성 여부를 살피고자 했다.²¹⁾

1. 응답자의 종교분포와 종립학교 인지 여부 조사

1) 응답자의 종교분포

※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불교	기독교	기타	종교 없음
선화예술학교	13.5	48.4	2.3	35.8
선화예술고등학교	11.0	41.6	11.6	35.8
선정중학교	7.0	33.8	10.1	49.1
선정고등학교	7.2	29.8	11.7	51.3
선정관광고등학교	5.2	40.9	4.3	49.6
평균	8.7	38.9	8.0	44.4

20) 통일교의 종교교과서는 6차 교육과정기인 1996년 처음 발행(『중학교』 종교 1, 2, 3, 『고등학교』 종교 1, 2)하였고 2010년에 개정판을 발행(『중학교 생활과 종교』 1, 2, 3,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하였다.

21) 설문조사의 대상은 각 중고등학교 2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선화예술학교(중학교과정)(교사 강순미) 310명, 선화예술고등학교(교사 김현준) 327명, 선정중학교(교사 문혜림, 박지인) 198명, 선정고등학교(교사 김용규) 520명, 선정관광고등학교(교사 장지영) 115명을 설문조사 했다(2012년 3, 4월).

통일교 종교교육 현장에서의 종교분포는 불교 8.7%, 기독교 38.9%, 기타 8.0% 그리고 종교 없음이 44.4%였다. 통일교 학생은 적은 인원으로 기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설문 결과는 현재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의 종교분포를 말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불교가 낮게 나온 것과 종교 없음이 거의 절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흥미롭다.

2) 응답자의 종립학교 인지 여부

※ 당신이 다니는 학교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	알고는 있다	잘 모르겠다	전혀 몰랐다
선화예술학교	51.3	42.6	4.8	1.3
선화예술고등학교	56.9	38.8	2.8	1.5
선정중학교	39.9	42.4	9.6	8.1
선정고등학교	45.8	42.9	7.5	3.8
선정관광고등학교	33.9	58.3	4.3	3.5
평균	45.6	45.0	5.8	3.6

응답자가 다니는 학교가 종립 사립학교인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는 ‘알고 있다’의 경우 다시 말하면 ‘잘 알고 있다’(45.6)와 ‘알고는 있다’(45.0)를 합쳐 90.6%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대부분 무작위 배정을 받았으면서도 1년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학교가 종립 사립학교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개별 학교의 종립학교 인지도의 차이도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종립학교인 것을 크게 저항 없이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종교적 차별 정도에 따른 종교교육 현장에서의 인권문제

1) 친구들에 의한 종교적 차별

※ 당신은 종교수업 시간에 당신의 종교 때문에 친구들에 의해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없다	모르겠다
선화예술학교	0	1.6	96.1	2.3
선화예술고등학교	0.9	0.9	87.8	10.4
선정중학교	0.5	1.5	91.4	6.6
선정고등학교	1.0	1.5	89.6	7.9
선정관광고등학교	0	1.7	97.4	0.9
평균	0.5	1.4	92.5	5.6

응답자의 대부분(92.5%)이 종교 교육에서 종교적 이유로 친구들에 의해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종교시간에 친구들에 의해 종교적으로 차별을 받은 경우가 약 2%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친구 간에 자신의 종교적 배타성을 나타냈다가 혹은 종교 문제로 다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생활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우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사에 의한 종교적 차별

※ 당신은 종교수업 시간에 당신의 종교 때문에 교사에 의해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없다	모르겠다
선화예술학교	0	1.0	96.7	2.3
선화예고	1.2	1.5	93.2	4.1
선정중학교	0.5	2.0	90.9	6.6
선정고등학교	1.0	3.1	88.0	7.9
선정관광고	0	1.7	97.4	0.9
평균	0.5	1.8	93.3	4.4

종교교육의 현장에서 종교교사에 의해 종교적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설문에 응한 응답자가 대부분(93.3%)이었다. 이는 비록 종교교사들이 통일교인이라 할지라도 통일교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했다거나 우월성을 제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설문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경우 0.5%, 조금 있다고 하는 경우 1.8%가 조사된 것을 보면 간혹 종교적 갈등 혹은 차별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향후 통일교의 종교교육에 있어 인권교육의 차원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사안으로 대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학교 당국에 의한 종교적 차별

※ 당신은 현재 학교에서 당신의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없다	모르겠다
선화예술학교	0.3	0.3	97.5	1.9
선화예술고등학교	1.2	1.5	93.2	4.1
선정중학교	0.5	1.5	91.9	6.1
선정고등학교	1.0	2.5	89.6	6.9
선정관광고등학교	0	1.7	98.3	0
평균	0.6	1.5	94.1	3.8

학교 당국에 의해 종교적 차별을 받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친구들이나 교사에 의해 종교적 차별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문 조사와 같은 수준의 응답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학교 당국에 의해 종교적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경우가 대부분(94.1%)이어서 학교 당국이 종교교과의 운영에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많이 있다’(0.6%)와 ‘조금 있다’(1.5%)의 응답이 약 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주의를 요한다. 학교 당국의 의도와 다르게 응답자의 종교적 차별이 약간이라도 있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 당국에 의해 종교적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인식 자체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교교육에 있어서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로 될 것이다.

3. 종교 대체과목 고지의 인지 여부와 종교교과서의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적합성여부

1) 종교 대체과목 고지의 인지 여부

※ 당신은 종교과목을 대체하는 다른 과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	알고는 있다	잘 모르겠다	전혀 몰랐다
선화예술학교	2.3	9.7	59.6	28.4
선화예술고등학교	4.3	9.5	52.9	33.3
선정중학교	5.6	20.7	49.0	24.7
선정고등학교	5.6	12.1	49.8	32.5
선정관광고등학교	0	6.1	55.7	38.2
평균	3.6	11.6	53.4	31.4

종교교육에 있어 종교적 차별을 막기 위한 정부당국의 종립학교에 대한 제안은 종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과목을 신설 운영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종립학교에서는 대부분 종교 대체과목을 신설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²²⁾ 또한 종립학교는 종교교과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과목을 학생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종교과목을 대체하는 다른 과목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84.8%)이 ‘잘 모르겠다’거나 ‘전혀 몰랐다’라고 응답함으로써 통일교의 학교 당국은 대체과목의 고지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다’(3.6%)와 ‘알고는 있다’(11.6%)가 약 15%에 달하는 것을 보면 대체과목의 고지를 도외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대체과목을 알고 있는 응답자를 위한 대체과목의 종류와 편성 등에 관해서 통일교 종교교육의 현장은 인권 신장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고병철, 『한국의 종교교육: 중등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46집(서울: 한국종교학회, 2007), 9쪽.

2) 종교교과서의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

※ 현재 종교수업 시간의 종교수업 내용이 한 종교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선화예술학교	1.3	11.3	57.4	30.0
선화예술고등학교	0.9	5.8	50.2	43.1
선정중학교	2.5	18.2	49.5	29.8
선정고등학교	8.8	28.5	47.3	15.4
선정관광고등학교	2.6	8.7	62.6	26.1
평균	3.2	14.5	53.4	28.9

통일교 종교교과서의 내용 중 어느 한 종교에 편중되어 있는가를 묻는 설문은 기실 2010년 개정된 통일교 종교교과서의 적합성 곧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묻는 것이었다. 설문 조사 결과 현재 종교시간의 종교수업 내용이 어느 한 종교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그렇지 않다’(53.4%), ‘전혀 그렇지 않다’(28.9%), 합계 82.4%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교의 종교교과서는 적어도 교육과정의 개정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종교교과서의 내용이 어느 한 종교에 편중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개정에 적합한지를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한 종교에 편중되지 않고 서술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적합성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에서는 종교교육의 현장에서 설문 조사된 한 종교에 대한 편중성이 ‘많이 그렇다’(3.2%), ‘조금 그렇다’(14.5%)로 거의 15%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 통일교의 종교교과서의 개정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종교교과서의 내용 중 종교 관련 인권교육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IV. 통일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

통일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말하기 전 통일교가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견해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이렇다. 통일교는 종교를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에로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²³⁾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을 무지에 떨어진 것으로 보며 이를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마음과 몸의 내외 양면인 것처럼 무지에도 내외 양면의 무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²⁴⁾ 하나님의 구원섭

23)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원리강론』(서울: 성화출판사, 2003), 4쪽.

리는 창조본연의 세계를 회복하는 복귀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외 양면의 무지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담당해온 것이 내적인 진리로서 종교요 외적인 진리가 과학이라는 견해다. 따라서 종교란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위한 수단이며 종말론적 희망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목적이 이루어진 종교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는 종교 없는 세상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종교의 자유는 보전되며 종교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일교에서 종교의 자유는 물론 중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더불어 종교교육을 받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점은 먼저 통일교의 종교교과서를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종교교과서의 내용이 어느 한 종교에 편중되어 있다고 대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것(82.3%)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2010년 개정되어 2011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통일교 종교교과서의 중학교(전체분량의 약 35.2%), 고등학교(전체분량의 약 24.5%)에서 특정종교(통일교)의 전통과 사상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종교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고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교과서의 내용이 국가의 종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균형 있게 기술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²⁴⁾ 그러나 종교교과가 다양한 세계관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학생의 사회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 종교교과서의 내용 중 어디에선가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종교 관련 인권을 가르치는 내용도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 종교교과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종교교과서의 내용이 어느 한 종교에 편중되어 있다고 말한 학생의 의견(17.7%)이 간과됨으로써 종교 관련 인권 교육에 소홀할 수 있게 된다.

종교과목 대신 개설하는 대체과목의 인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설문 조사 결과(84.8%)는 종교 수업의 자유를 위한 대체과목을 잘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과목의 개설 이전에 대체과목의 인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며 종교 관련 인권을 보전하는 길을 열 수 있어 오히려 중립학교로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통일교가 세운 중립학교임을 잘 아는 학생들(90.6%)로서 이미 조사 발표된 것처럼 종교적 차별이 거의 없는 것 곧 학생의 종교적 인권이 보장되고 있음을 보면 통일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인권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없이도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종교교사를 통한 몇 가지의 설문을 조사한 결과 먼저 다른 기독교 학교들과

24) 앞의 책, 3쪽.

25) 통일교 종교교과서의 평가는 이재일, 「통일교 중등학교 교과서 개발」 『종교교육학연구』 제38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124-125쪽 참조.

는 달리 채플(학교예배)을 전혀 보지 않고 있으며 종교적인 특별집회나 모임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⁶⁾ 다음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순증서약서나 가정통신문을 거의 보내지 않고 있다.²⁷⁾ 마지막으로 종교적 차별이 학생 중 극소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최근 기독교인 학생이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괴로워 스스로 자퇴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학교 당국에 의한 차별이나 통일교 학생이 많지도 않지만 통일교 학생으로서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없다는 조사가 있었다.

V. 끝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다면 먼저 이미 학생들의 설문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미미한 종교적 차별을 마저 없애도록 하는 종교교육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통일교의 종립학교는 평준화에 따른 강제배정의 시기가 지나고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이 찾아지는 때를 대비하여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 정립을 연구하고 비전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추후 종교교과서를 개편할 때 종교 관련 인권에 관한 내용을 과감히 담아내야 할 것이며 종교 관련 인권교육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교성 교육을 위한 미래의 종교교육이야말로 종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이 될 것이며 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종립학교만의 희망이 아니기 때문이다.

26) 한 학교에서 교사들의 수요 정기 예배나 교회행사에 희망자에 한해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고 있기는 하나 많은 수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다.

27) 가정통신문의 경우도 한 학교에서 학기 초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로 언급되어 보내고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 강의석, 「학교 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 『민주법학』, 제26호, 서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 고병철, 「한국의 종교교육: 중등 중립학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46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7.
- 고진호,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을 위한 방향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제2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김성재 외, 『인권시대를 향하여』, 서울: 나남출판, 2002.
- 김유환, 「초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법학연구』, 제9권 1호, 서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 김항제, 『통일교의학연구 II』, 아산: 선문대출판부, 2002.
-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원 엮음,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2007.
- 미셸린 이사이, *The History of Human Rights*, 조효제 옮김, 『세계인권사상사』, 서울: 도서출판 길, 2005.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생활과 종교』, 1, 2, 3, 서울: 성화출판사, 2010.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 서울: 성화출판사, 2010.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2003.
- 이승진 외, 「중립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법교육연구』, 제2권 제2호, 서울: 한국법교육학회, 2007.
- 이재일, 「통일교 중등학교 교과서 개발」, 『종교교육학연구』, 제3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 이종은, 『평등, 자유, 권리』, 서울: 책세상, 2011.
-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서울: 홍문사, 2010.
- 임지봉, 「사립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인권」, 『세계헌법연구』, 제17권 2호, 서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 조효제,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2007.
- 황준성 외, 「‘종교교육의 자유’의 법리 및 관련 법령 판례 분석」, 『교육법학연구』, 제19권 2호, 서울: 대한교육법학회, 2007.
- John Witte, Jr and M. Christian Green ed, *Religion and Human Righ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cafe.naver.com/hakjawool
- www.kirf.or.kr
- www.st-rights.or.kr

원고접수 : 2012년 6월 6일 / 1차 심사 : 2012년 6월 22일 / 게재승인일 : 2012년 7월 18일

연구자 소개 : 김항제

- ① 전공 : 종교사회학, 종교교육학, 통일교의학
 - ② 관심영역 : 신종교연구, 다문화종교교육연구, 평화학연구
 - ③ 주요논저 : 통일교의학연구, 원리성서해설, 가전불가수 등
 - ④ 이메일 : hjbuli@hanmail.net
-

Abstract

Religious Education and Human Right of Unificationism

Kim, Hangje

Sun Moon University

As religion is one of important parts of culture, the discourse about human right in religion is naturally significant. The human right in religion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devotional discrimination in a religion. The other is discrimination and suppression in a religion between religions or between religion and society. Therefore, religious education should cover the discourse about human right in religion and way to overcome the discrimination and suppression.

This paper will examine and analyze the problem of human right in the field of religious education in Unificationism. Unificationism puts emphasis on the freedom of education and students' freedom of religion. As the social role of religion is to overcome conflicts and to integrate society, the freedom of religion and human right should be taught.

According to survey, most of students(90,6%) know that Sunmoon university is established by Unificationism and the human right in the field of education has been relatively well accomplished. However, there is some parts to draw our attention in terms of human right in Unificationism. For example, the survey shows that alternative class instead of religious class is well not recognized(84,8%). It means the freedom of religious class is disturbed. Therefore, we have to study and practice several methods to make students recognize alternative class. Thus, preserving the freedom of religion and human right can make the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improve.

Key words : Unificationism,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Freedom of Religion, Religious Human Right, Discourse of Human Right